

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

○ 주택공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!

국민의힘 중랑구 제4선거구 민병주 의원입니다.

본 의원이 발의한 「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.

○ 이번에 발의한 개정 조례안은 지난 1월 정부에서 발표한

「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」의 재개발 사업 노후도 요건 완화에 대한 내용을 담았습니다.

현재 재개발 사업은 노후도 요건을

전체 건축물의 수의 3분의 2(67%) 이상 충족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신축빌라 혼재 등 부지의 특성에 따라 일부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.

이에 재개발 노후도 요건을 현행 67%에서 60%로 완화하여

정비구역 추진 가능 대상 지역을 확대하고

속도감 있는 정비사업을 추진하고자 개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.

-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, 재개발 사업 노후도 요건을
전체 건축물의 수의 3분의 2에서 60%로 완화하겠다는 것입니다.
-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,
말씀드린 제안 취지를 바탕으로 검토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.
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